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4. 11. 27.(수)

검토안건	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해영 의원 외 9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차해영 의원 외 9명
- 제안일 : 2024. 11. 15.
- 회부일 : 2024. 11. 18. (의안번호 : 24-137)

2. 제안이유

-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를 방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정의 신설(안 제2조)
- 다. 조례안 전체 조문에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개정(안 제1조~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10. 18.~10. 2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를 방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조례안 전체 조문에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개정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마포구 오피스텔 폭행 사망 사건’, 2024년 3월 교제 중인 여친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같은 해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명)	6,675	7,692	8,367	10,303	10,245	9,858	8,982	10,554	12,841
전년 대비 증감율(%)	-	15.2	8.8	23.1	-0.6	-3.8	-8.9	17.5	21.7
2014 대비 증가율(%)	-	15.2	25.3	54.4	53.5	47.7	34.6	58.1	92.4

※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3.8.), 교제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교제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교제폭력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이처럼 교제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잠재적인 불안과 상호 간 의심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범죄의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와 더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실태조사, 예방교육, 심리·법률 상담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행복 지원과	김은숙 (8910)	김지영 (89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김성현
연 락 처	02-3153-8927

참고 자료

1. 관계법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톱킹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조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톱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톱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톱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스톱킹과 교제폭력의 구분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 스톱킹은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간에도 이뤄지는 반면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에 연인으로서 교제하는(했던) 경우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이 구분됨.

3. 지방자치단체 조례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정의 현황

연번	조례명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용어 정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 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2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 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수원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 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4	여주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 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월군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 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6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7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 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연번	조례명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용어 정의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스토킹·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교제폭력”이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1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11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하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 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